

Premium Report 제18호
(2015. 12. 30)

표준시장단가의 시행에 대하여

 **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작성 자 : 김서경 연구원

내용문의 : T - (031) 231-3432 / E - ksk@kici.re.kr

| 개요

- 정부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시 활용되던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시행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한 상태임.

※ 실적공사비는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95.7.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으며, 이미 수행한 공사를 토대로 축적한 계약단가 만을 활용하여 산정된 공종별 단가를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정의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축적·관리한 자료에 매년의 인건비/물가상승률/시간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①거래실례가격, ②원가계산 ③표준시장단가
④견적가격에 의해 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을 통해 결정됨.

●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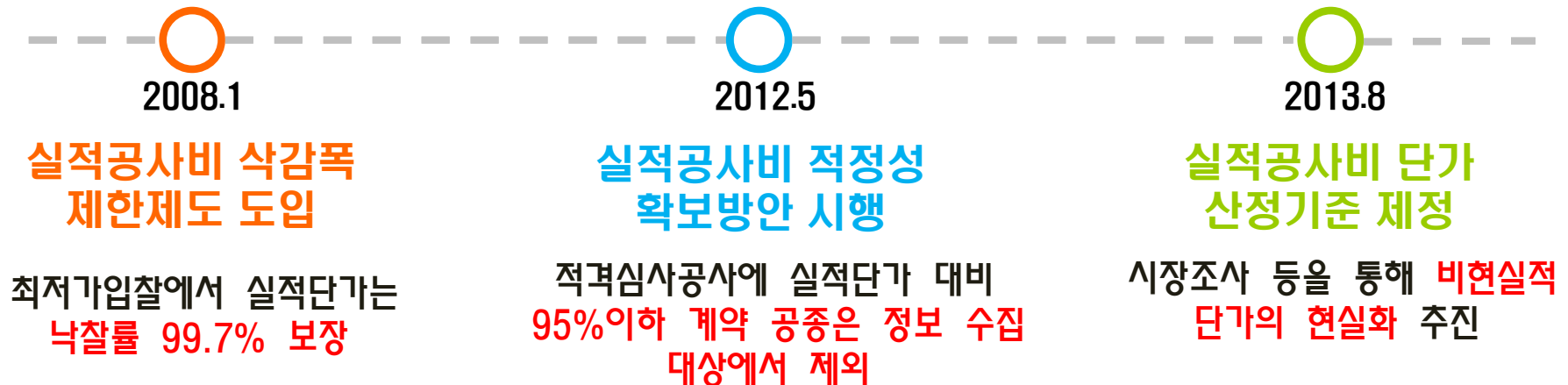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원가계산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공의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복잡하며, 담당자의 견적능력 및 재료 조사단가에 따라 공종별 단가가 달라 질 수 있음. • 노무비 : 공종별 표준품셈의 품 x 노임단가(시중노임) x 수량 • 재료비 : 재료가격(물가정보, 조달청자재단가 등) x 수량 • 경 비 : 직접경비(기계경비 등), 간접경비(4대보험 등)로 구분하여 산출 |
| 표준시장단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수행된 공사의 내역서로부터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추출한 공종별 단가(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를 통해 산정되는 방식으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효율적이며, 일관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함. |

| 계약단가만을 활용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문제점 발생

●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업계의 과당경쟁 및 저가낙찰 누적으로 단가의 하락 유발

- 입찰문화 특성(최저가, 적격심사)에 따라 저가 및 고정 낙찰단가가 필터링 없이 누적되며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 업계 경영난 악화**

| 단가의 하락 방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하였으나 미흡



기재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하여**
해외사례 등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로 전환·개편을 추진**

| 미국 · 영국

- 과거 유사공사의 **입찰단가, 계약단가** 등 다양한 자료 및 자료들을 가공한 평균값 등을 실적공사비 가격으로 활용



발주기관별 과거 집행된 공사에 대한 자체 실적 DB 보유



QS(Quantity Surveyor)전문 회사가 구축 축적한 자료를 사용

- 수집된 실적공사비를 참고하여 엔지니어 등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보정 활용하여 공사 예정가격 산정

| 일본

- **입찰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실적공사비로 활용
- 지역 및 사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 및 시공방법, 노무, 기계 등의 변동을 반영 보정하여 공사예정가격 산정

|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정보수집 체계 개선 및 명칭 변경

- 입찰문화 특성(과당경쟁, 고정 낙찰률)으로 계약단가 만으로는 경직되어
시장단가 반영이 미흡 →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 및 검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5조 2항

현 행(시장가격반영곤란)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

개 선(다양한 시장거래 가격반영)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 표준시장단가

| 시장가격 반영까지 표준시장단가의 한시적 탄력적용(계약예규)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2016.12.31 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 정보수집 체계 개선을 통한 표준시장단가의 시장가격 반영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한시적으로 탄력 적용

| 분야별 특수성에 따른 단가 보정 적용체계 구축

● 지역특성, 공사환경 등 공사분야별 특성에 따라 단가 보정 방안 연구

- 급변하는 시장상황 등 공사비 영향요소를 조사 및 DB화 하여 단가에 반영
- 선진 외국의 경우 계절, 작업기간, 규모, 접근성, 자재수급 조건 등 다양한 보정요소 반영

현 행(보정 미비)

계약단가 단순 수집
물가변동 정보 반영

개 선(최적화된 단가 적용)

시장, 시공상황에 따른 보정
지역, 작업환경 등에 따른 보정
물가변동 정보 반영

| 주요 공종단가의 우선조사 및 현실화

● 저가 입찰 등으로 급격히 낮아진 일부 주요공종의 우선 현실화 추진

- 표준품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종을 선별하고, 시공단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시기

- 미래창조과학부는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연구 및 제도 홍보를 위해 **2017년 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2695, 2015.12.16 “정보통신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시기 유예”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대상 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28호, 2015.3.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제2항에 따라 **추정 가격이 100억 이상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할 수 있음.
- 따라서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 및 적용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공사의 약 0.02%** 정도가 대상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기준)

| 구 분 | 내역입찰 건수(100억이상) | | 발주금액(백만원) | |
|------|-----------------|-------|-----------|-------|
| 통신분야 | 64 | 0.02% | 1,130,500 | 8.72% |

| 활용 정보(계약, 입찰, 시공단가 등)에 대한 정의 확립 연구

| 구 분 | 건설분야 | 전기분야(안) |
|------|--------------------|-------------------------|
| 계약단가 | • 낙찰업체가 제출한 계약내역서 | • 낙찰업체가 제출한 계약내역서 |
| 입찰단가 |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 • 발주처가 입찰을 위해 설계한 설계내역서 |
| 시공단가 | • 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시공비 |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

- 표준시장단가의 연구를 주도한 건설분야(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입찰단가, 시공단가, 계약단가를 자체 규정하여 현재 표준시장단가를 산정중에 있으며 전기분야는 검토중.
- 하지만 동일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의해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표준시장단가 산정과정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정립필요.

| 입찰 단가(내역입찰대상) 조사의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 연구

- 통신 및 전기분야의 내역입찰 건수는 약 0.02%이며, 공공 발주기관의 내역입찰 수는 더 적어 조사되는 **입찰단가의 대표성 및 통계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 다년간의 지속적인 자료 추적 및 수집, 축적, 면밀한 단가 분석 (대표성, 통계값 등)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산정의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시공단가 조사체계 확립 및 신뢰성 확보 연구

- 공사업체를 통한 시공단가(공종별 실제 시공비용)조사는 하도급 등 다양한 계약관계, 공종별 상세단가 견적경험 부족 등 **조사자체와 신뢰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
- 또한 현장의 시공단가를 보정방안 없이 반영할 경우 낙찰제도에 의해 **표준시장단가의 하락이 발생**되고 이는 공사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시공을 초래
- 시공단가의 신뢰성 확보 및 보정방안이 수립 된다면 좀 더 **현실적인 현장의 시장단가를 표준시장단가에 반영**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관련 연구가 필요함.

구조적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활용 방안 마련 연구

- 낙찰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계약내역서의 단가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할 경우 구조적 하락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 -> 보정방안을 통해 축적과정에서 필터링 하고 있지만 구조적 해결은 불가
- 구조적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내역서의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이상치, 관행적 설계단가 등 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신뢰성 있는 단가만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표준시장단가 활용자료(계약, 입찰, 시공 단가 등)를 통한 단가산정 방법, 결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 표준시장단가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 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해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함.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부적정 판정 유의

-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처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은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표준시장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판정이 됨에 따라 입찰내역서 작성시 유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부적정공종의판정)제1항 제3호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 구조적 하락 방지를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유의 사항

- 산출내역서 작성시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되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부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최소화** 하여 작성 해야만 구조적 공사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낙찰률의 일률적 적용에서 벗어나 공사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단가를 산출하여 제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

●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 회복을 통한 **업역보호 및 적정공사비 확보**

- 표준품셈 거품론에 따른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 부재 속에서 발주처는 설계시 특별한 삭감기준 없이 표준품셈을 일률적으로 삭감(보통20~30%, 최대40~70%) -> 적정공사비 확보 제동
- 또한 과거에 실적공사비 적용공사가 확대(편의성)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는 제도연구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면서 **전기공사의 실적단가를 통신공사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업역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배관, 배선 등 주요 유사공종 : 2014년 실적단가 기준 약 150여개)
- 정보통신공사의 업역보호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병행적 활용 전략**(표준시장단가의시행,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을 통해 **공사비산정기준의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함.**

●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 자재단가 조사의 어려움과 공종별 노무비 산정이 복잡한 원가계산 방식(적산업무 전체의 약 70% 차지)의 예정가격 작성에서 벗어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하나로 합산**되어 발표되는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함으로써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